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395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3959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1487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강인구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교식

변론 종결 2022. 10. 20.

판결 선고 2022. 11. 17.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14870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소유지분에 관하여 202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698,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옥

판사김미리

판사조윤신

별지